

8/13 조간

경인지방환경청
보도자료

2004년 8월 일 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4.8. 배포
- ☐ 사진없음
- ☐ 총 5쪽

경인지방환경청	환경관리과장	진득환	전화	031-4811-331
---------	----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

안산시 반월공단내 폐기물처리업체 신규 입주 제한

- ☐ 경인지방환경청장(한기선)은 최근 악취로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도 시화공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폐기물의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리업, 최종처리업, 종합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입주를 전면 제한 한다고 밝혔다.
- ☐ 이러한 조치는 그간 반월공단 주변 주거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여 산업자원부의 『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』(산자부고시 2004-83호 '04. 8. 7) 변경과 경기도의 『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제한』 조치와 보조를 같이 하여 『반월공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』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.
 - 그동안 시화공단에 대하여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『시화공단 폐기물·폐수처리업 허가(등록)제한계획』('02. 11. 18)에 의거 폐기물·폐수 처리업체의 신규 및 증설을 제한바 있음.
- 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『반월공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계획』의 주요내용은

- 폐기물의 수집·운반업 중간, 최종, 재생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처리업소에 대한 악취 관련 배출시설의 증설도 제한 한다.

- 기존 허가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위한 배출시설의 대체 및 방지시설의 증설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며,

- 또한 기존 허가된 폐기물처리업 영업에 있어서 수집·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량(처리용량) 확대를 제한하되

- 다만,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처리시설의 용량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인정할 예정

□ 아울러, 경인지방환경청에는 반월공단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폐유, 폐유기용제등 액상의 지정폐기물 일부량(약 1일 30톤)을 소각·제한하고 있으며, 6개 지정폐기물소각업체에 33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토록하고 악취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붙임 : 반월공단내 입주제한 업종 현황 1부.

반월공단 내 입주 제한 업종

○ 근거

- 산업자원부의 「반월구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」(산자부 고시 2004-83호, '04.8.7)
- 경기도의 「반월·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제한 세부계획('04.8.9)
- 경인청의 「안산시 반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제한 계획」('04.8.10)

○ 입주업종 현황

구 분	입주제한 업종	비 고
◇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	● 연탄, 시멘트·레미콘제조업, 아스팔트 및 포장 재료 제조업, 곡물도정·제분업, 임가공도축업, 원피가공업, 원모피처리업	산자부 경기도
◇화합물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중 악취 다량 배출 가능 업종	● 기초화합물, 비료 및 질소화합물,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, 살균·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합 물, 도료·인쇄잉크 및 유사제품제조업	산자부 경기도
◇위생 및 유사서 비스 업종 중 악취물질 배출 가능 업종	● <u>일반 및 지정폐기물 수집·처리업</u> , 폐수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, 축산폐기물수집·처리업 ● 지정 악취물질(암모니아 등 22종)	산자부 경기도 <u>경인청</u>
◇기타업종 중 악 취물질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 가능업종	●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물질, 특정 대기·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으 로서 관리기관이 관련 인·허가기관과 협의하 여 지정하는 업종 - 특정 대기 유해물질(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25종), 특정 수질유해물질(구리 및 그 화합물 등 17종), 난분해성 물질(섬유 관련업종), ※ 세부내역 붙임 참조	산자부 경기도

<붙임 : 세부내역>

◇특정 대기유해물질 - 25종

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	2. 니켈 및 그 화합물	3. 이황화메틸	
4. 시안화수소	5. 염화비닐	6. 아닐린	7. 디옥신
8. 납(연) 및 그 화합물	9. 클로로포름	10. 불소화물	
11. 페놀 및 그 화합물	12. 포름알데히드	13. 크롬화합물	
14. 벤지딘	15. 베릴륨 및 그 화합물	16. 아세트알데히드	
17. 비소 및 그 화합물	18. 벤젠	19. 석면	20. 사염화탄소
21. 수은 및 그 화합물	22.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	23. 1-3부타디엔	
24. 프로필렌옥사이드	25. 염소및염화수소		

※ 다만, 금속·비금속관련 업종 중 1차금속·비금속제품 사용원료 주 성분이 특정유해물질이 아닌 경우, 제외함

◇특정 수질유해물질 - 17종

1. 구리(동) 및 그 화합물	2. 6가크롬 화합물	3. 시안화물
4. 납(연) 및 그 화합물	5. 카드뮴 및 그 화합물	6. 벤젠
7. 비소 및 그 화합물	8. 테트라클로로에틸렌	9. 사염화탄소
10. 수은 및 그 화합물	11. 트리클로로에틸렌	12. 디클로로메탄
13. 셀레늄 및 그 화합물	14. 1,1-디클로로에틸렌	15. 페놀류
16. 유기인화합물	17.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	

◇난분해성물질 : 섬유(염색, 표백, 정련, 나염 등) 관련업종

※ 다만, 발생폐수를 염색단지내 공동방지사설에 유입·처리가 가능할 경우 제외함

◇지정 악취물질 - 22종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암모니아 | 12. i-발레르알데하이드 |
| 2. 메틸머캅탄 | 13. 톨루엔 |
| 3. 황화수소 | 14. 자일렌 |
| 4. 다이메틸설파이드 | 15. 메틸에틸케톤 |
| 5.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| 16. 메틸아이소뷰틸케톤 |
| 6. 트리메틸아민 | 17. 뷰틸아세테이트 |
| 7. 아세트알데하이드 | 18. 프로피온산 |
| 8. 스타이렌 | 19. n-뷰티르산 |
| 9. 프로피온알데하이드 | 20. n-발레르산 |
| 10. 뷰티르알데하이드 | 21. i-발레르산 |
| 11. n-발레르알데하이드 | 22. i-뷰틸알코올 |